#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## 제7조 [채광 및 조명]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### 제7조(채광 및 조명) · 조문 원문

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그림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에는 법령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대조 2026. 10. 28.